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46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정준호·정동영·복기왕

김정호 • 박희승 • 이연희

김동아 · 염태영 · 안태준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 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

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11(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보관 중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용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에 저장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2.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11(사망한 이용자가 남
	긴 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
	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
	용자의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
	종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
	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u>니하다.</u>
	1. 이용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에 저
	장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를 말한다)

 2.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

 한 부호・문자・음성・음향・

 영상 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